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회계 정보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infra)임.
- 특히,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건설기업의 정확한 회계 정보는 투자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함.
- 정부는 IMF 외환 위기와 미국의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우리나라의 대우, SK글로벌 사건 등 일련의 대형 회계 부정사건을 계기로 기업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즉,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 건설형 공사계약」 제정, 회계 감사 및 공시와 관련된 기능 강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분식 회계 및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회계부정 행위의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법제화하였음.
- 한편,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건설업계 일각에서도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예들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별로 손익계산서를 주식으로 공시하여 건설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은 부패 방지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의 입·낙찰 과정에서 공정한 낙찰자 선정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부패 방지 및 공공수주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 회계처리에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그간 건설업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였던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 제정된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 하에서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를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함.

제2장 건설업 회계처리 기준

-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 정보의 유용성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여 「기업회계기준서」를 공표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는 목차, 요약, 목적, 적용 범위, 회계처리방법, 주석 공시, 시행일, 경과조치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은 용어 정의, 적용 보충 기준, 타 기준서의 개정, 기준위원회 의결로 구성됨.
-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계약의 분류, 공사계약의 분할, 공사계약의 병합, 공사수익 항목, 공사원가 항목, 공사계약 전 지출의 회계처리,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진행기준, 원가회수기준, 즉시처리비용),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및 가설재의 회계처리 등임.

제3장 건설 회계의 투명성 저해 요인

1. 건설업 회계처리의 특징

(1) 회계처리의 차이를 유발하는 건설업의 특성

- 건설업을 제조업과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주문형 생산방식에 의해 생산되며, 생산에 장기를 요한다는 점임. 이것이 건설업이 제조업과 달리 별도의 회계처리 방식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준서는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회계처리를 주 내용으로 함.

(2) 진행기준에 따른 공사수익의 인식

- 건설업의 특성에 기인하여 건설업 회계가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임.
- ‘진행기준’이란 도급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임. 이와 같이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임.
- 공사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 즉 공사원가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물량기준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진행기준은 회계정보의 적시성이 증대되고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행률의 추정이 회계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3) 각 현장별 및 개별공사의 합산에 의한 회계처리

- 건설업의 특성에 기인한 건설업 회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건설업의 최종 재무제표는 각 현장별 및 개별공사의 합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임.

- ① 1차적으로 각 현장별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 ② 각 현장별 회계처리 내용이 집계되어 특정 도급공사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 ③ 개별공사의 회계처리 내용이 본사에서 집계되어 연말에 그 기업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짐.

2. 건설업 회계 부정의 유인

(1) 다양한 인허가 및 승인과 불투명한 거래의 발생

-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사업의 특성과 프로젝트 진행상 다양한 인허가와 승인 등을 요하여 부정과 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을 위하여 투명하지 않은 거래(transaction)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높음.

- 비리를 야기하는 자금원 확보를 위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투명한 거래는 건설공사 원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하도급 거래(외주비)이며, 다음이 자재 구입 거래(재료비)임.

- 재료비의 경우에는 구매내역, 사용내역, 그리고 재고에 대한 실사를 통해 거래 내역의 진위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나, 외주비는 양 거래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는 이상 이면(裏面)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이 경우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처리 자체에는 어떠한 왜곡도 발생하지 않게 됨.

(2)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영향

- 현재 공공공사 입찰의 경우 경영상태에 대한 지표는 입찰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작용함.
- 특히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전체 배점에서 경영상태에 대한 배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수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됨.
- 이와 같이 공공공사, 특히 소규모 공공 공사에 있어서 경영상태가 공사수행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신인도나 시공경험이 유사한 중소기업체들은 경영상태를 수주를 좌우하는 변수로 인식하게 되어 경영지표 조정을 통한 회계 왜곡의 유인을 갖게 됨.

(3) 공동도급시 단일 회계 처리를 위한 기준의 불명확

- 회계 왜곡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중의 하나는 공동도급(partnering)시 단일 회계 처리를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임.
- 현재의 공동도급은 수주 단계에서부터 공사의 실행단계 및 사후 처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회계 상의 문제임.
 - 현행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계약은 참여 지분비율에 의한 단일의 시공업체 형태를 요구하며, 공동수급체의 회계업무는 공사의 원가를 참여사의 지분을 만큼 분할하여 안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즉, 공동도급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된 단위조직으로 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움.
- 현행 공동도급이 실행예산 작성의 어려움, 기성신청 및 각종 세금계산의 번거로움 등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과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공동도급의 수주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분율만을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수행함.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계 왜곡이 발생하게 됨.

(4) 회계왜곡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경영자의 의식 결여

- 그간 많은 건설업 경영자들은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결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사의 신뢰에 미칠 영향과 나아가 업계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이익에만 급급해 옴.
·기업의 경영상태 왜곡은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신뢰를 실추시켜 경영 악화시 회생 불능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 건설업 전반의 경영상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이 수주를 위해 동일하게 경영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업계 평균 비율을 높이고, 다음해에는 이를 감안하여 다시 자사의 경영비율을 높여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경영상태 왜곡은 금융기관들이 건설업체의 재무제표를 불신하게 만들어 산업별 여신 제공 시 건설업에 대한 비중을 낮추게 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됨.

3. 회계처리와 관련된 투명성 저해 요인

- 건설업의 특성에 기인한 건설회계의 특징은 건설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을 내포함.
- 건설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자의적인 진행률의 산정과 진행률 기준의 적용임.
·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의 인식은 당해 연도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손익 규모를 조정하는 경우가 빈번함.

·건설업체들의 자의적인 진행률 기준 적용은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총공사예정원가를 조정하여 특정 회계기간의 공사 수익 금액을 조정함. 이는 결국 공사미수금 규모를 달라지게 함으로써 유동비율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둘째, 현장 및 공종별 합산처리에 따라 개별 현장 및 공종별 손익 왜곡의 진위 파악이 어려움.

·건설업체의 회계기말 재무제표의 경우 장부상 대차가 일치하여 문제가 없다면 실제 현장별 거래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검토하지 않는 한 어떤 현장 또는 어떤 공사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 셋째, 계정과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건설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양한 거래가 발생하여 각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 기업마다 차이가 남. 결국 이러한 임의적인 계정과목의 설정 및 거래의 처리는 손익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제4장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1.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체계

- 현재 미국의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권한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가지고 있고, 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기준 제정을 1973년부터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ASB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위임하고 있음.

- 회계 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이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민간단체로서 국제 회계 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2.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 국제회계기준 제11호(IAS No. 11: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No. 11)에서는 적용 범위가 계약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계약자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제회계기준(IAS No. 11)에서는 fixed-price contracts와 cost-plus contracts에 대해 동 기준이 적용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 미국회계기준(ARP No. 45와 SOP 81-1)에서는 주로 건설계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다른 형태의 계약에도 적용됨.

(2) 진행 기준과 완성 기준

- 국제회계기준은 진행 기준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의 종류에 따라 진행 기준의 적용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미국회계기준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진행률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완성기준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음.

(3) 총공사예정원가의 추정

- 국제회계기준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 수익과 공사원가는 검토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회계기준에서는 총 공사예정원가를 추정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① 체계적이고 일관된 절차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실제 비용과 추정비용을 비교할 것, ② 총공사원가를 추정할 경우 모든 원가 구성 요소의 수량과 가격을 제시할 것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4) 진행률 산정 방법

- 국제회계기준은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대차대조표일까지의 원가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실제 수행한 작업 비율, 계약한 작업의 실제 완성비율로 계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회계기준은 진행률 기준은 원가, 부가가치 및 작업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유사한 특징을 갖는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률 계산 방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5) 공사계약의 분류

- 미국회계기준에서는 공사계약을 정액 또는 총액 계약(fixed-price or lump-sum contracts), 시간-재료 계약(time-and-material contracts), 원가형 계약(cost-type contracts) 및 단위가격 계약(unit-price contracts)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정액 계약(fixed-price contract)과 원가보상계약((cost plus contracts)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6)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기준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사 계약의 병합이나 분할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 미국 회계 기준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후 그 기준을 만족시키면 병합이나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7) 공사원가와 수주비

- 국제회계기준은 공사와 직접 연관되고 측정 가능한 원가는 모두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있음.
- 국제회계기준은 수주비는 비용 처리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즉, 계약과 직접 연관이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 개별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사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음.

(8) 주식공시사항

- 국제회계기준에서 건설기업은 해당 회계기간에 인식한 계약의 수익, 수익의 인식 방법 및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의 진행률(the stage of completion of contracts in progress) 등을 주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회계기준에서는 수익 인식 기준으로 채택한 회계원칙 즉, 완성기준과 진행 기준 중 채택한 수익인식원칙 및 공사계약의 합병과 분할 기준 등에 관한 기업의 회계정책, 진행기준을 채택한 경우 구체적인 진행률 산정 방법, 수익인식 기준으로 완성기준을 채택한 경우 공사의 실질적인 완성을 판단하는 판단기준, 클레임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익과 원가에 대한 정보, 계약에 대한 추정치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영향, 완성기준에서 진행기준 또는 진행기준에서 완성 기준으로 수익인식 원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시사점

- 총공사예정원가를 추정할 경우 미국회계기준은 ① 체계적이고 일관된 절차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실제 비용과 추정비용을 비교할 것, ② 총공사원가를 추정할 경우 모든 원가 구성 요소의 수량과 가격을 제시할 것 등과 같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미국회계기준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는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률 산정 방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총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규정은 우리나라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에 도입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 모두 주식 공시사항으로 공사건별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및 이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제5장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

1. 회계처리 방식의 개선

(1) 진행률 기준 변경 요건의 명확화 및 공시 의무 강화

- 현재 각 회계기간별로 진행률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회계기준에서는 “유사한 특징을 갖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진행률 계산 기준이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진행률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2)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시 고려 사항의 구체화

- 공사예정원가의 조정을 통한 자의적인 진행률 조정에 따른 손익 왜곡 문제의 핵심은 총 공사예정원가를 얼마나 신뢰성있게 추정하느냐에 달려 있음. 따라서 공사 예정 원가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임의적으로 진행률을 조정하여 수익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회계 기준서에서는 예정원가 산정시 자의성을 배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정 원가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3) 표준적인 계정과목의 설정과 처리방법의 표준화

- 건설업 회계의 경우에는 아직도 원가나 총 비용의 조정, 절세 등을 위하여 기업별로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음.

·특히 원가 구성 항목의 하나인 현장 및 본사의 인건비 계정의 처리, 접대비, 분양 대행 수수료, 턴키 설계비, 시내 교통비 등 경비계정 역시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종종 발생하는 과목들임.

·이와 같이 손익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계정 과목의 경우에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회계처리시 업체들의 혼란을 없애고 자의성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함.

2. 감시기능의 강화: 증자 및 대여금 관련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주식 공시

- 상장 법인이 아닌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증자 후 증자 대금이 불명확하게 사용될 뿐 아니라 주주, 임원, 관계 회사 등 해당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회사의 자금이 무분별하게 대여되고 있음.
· 이와 같이 회사 관계자들에 의한 회사자금의 불명확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개인의 회계와 기업의 회계를 분명하게 구분 짓지 않음으로써 회계 정보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됨.
- 따라서 상장법인 이외의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향후 증자 대금 사용 내역과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주식으로 공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건설관련 제도의 개선

(1) 적격심사시 외부감사를 수행한 중소 건설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현재 일반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대상이 되고 있는 12,000개사 중 외감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체는 불과 5%인 600개사에 불과하며, 95%에 해당하는 11,400개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외감법 적용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감사기능 강화 조치는 대형 건설업체에게는 적용될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 건설업체의 분식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임.
- 현재 중소기업들 사이에 공공공사 수주를 위한 적격심사 점수 취득을 위해 영업이익률을 상향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적격심사시 외부감사를 수행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방안은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회계를 제대로 신고한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업계내의 부정적인 사고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2) 공동도급시 단일회계체제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개별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각기 이익을 도모할 경우 공동도급의 운영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해의 상충에 따른 회계 왜곡이 발생하게 됨.
- 공동도급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고 이러한 이해 상충에 따른 회계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현장 협력조직과 그에 따른 단일 회계체제가 요구됨.
- 공동수급체의 단일회계체제 방안으로는 첫째, 공동수급체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방안, 둘째, 공동수급체를 제3의 법적 인격체(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방안, 셋째, 공동수급체 회계를 대표회사 전산시스템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음.
- 상기의 세 가지 방안은 모두 공동수급체의 단일회계단위로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공동도급 시 회계의 인위적 조작을 어렵게 하는 방안임. 그러나 이중 공동수급체를 법인화 방안은 회계를 단일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 가능한 방안으로는 공동수급체 형태로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거나, 공동수급체의 운영은 현행과 같은 체계를 유지하되 공동수급체를 단일회계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단일회계단위로의 운영에 필요한 회계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4.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 주석 공시에 대한 평가

- 최근 건설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별로 손익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러한 주장은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 내용은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영업 비밀을 공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함.
·제조업도 개별상품에 대한 제조원가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음.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는 것은 건설업체 회계 실무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함.
-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에서도 프로젝트별로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게 하고 있지는 않음.
·국제회계기준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사에 대해서 원가의 합계, 선급금 합계 및 유보금 합계를 주석으로 공시하게 하고 있음.
- 오히려 우리나라의 「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들로부터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실현이 예상되는 총공사손실예상액 및 중요 공사별 총공사손실예상액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프로젝트별로 손익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 원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6장 결론

- 건설업은 타 산업과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대형 공공공사를 수행하며, 수주산업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에 장기간을 요하고, 그 프로세스 또한 프로젝트별로 정형화시키기 어려워 회계 왜곡이 발생하기 쉬워 회계의 투명성이 더욱 요구됨.
- 건설업 회계 부정의 유인과 건설 회계의 투명성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건설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회계 처리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 둘째, 증자 및 대여금의 주식공시를 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셋째, 건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요구됨.
- 이제 회계의 투명성 제고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보다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현실과 회계 처리 이론상의 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해 건설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도됨.
- 건설업 회계 처리에 관한 본 연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연구의 성격이 짙으므로 향후에도 업계의 상황과 현실을 반영하여 회계이론과 현실의 적합성을 높이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